

韓國警察教育의 現況과 改善方案*

— 學校教育을 中心으로 —

朴 炳 烈**

目	次
第 I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第 1 節 警察과 教育訓練
第 2 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第 2 節 教育機構
第 II 章 韓國警察教育의 變遷	第 3 節 教育課程 및 教育內容
第 1 節 初期의 警察教育	第 IV 章 韓國警察教育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第 2 節 6·25 動亂과 戰時教育	第 1 節 問題點
第 3 節 5·16 革命과 警察教育	第 2 節 改善方案
第 4 節 教育發展과 警察大學 設置	第 V 章 結 論
第 III 章 韓國警察教育의 現況	參考文獻

第 I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韓國警察은 發展過程에서 社會的 混亂과 無秩序를 바로 잡아 大韓民國 樹立時에

* 本 論文은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碩士學位論文(1984.8)을 要約한 것임.

** 警察大學 教官.

建國의 기반을 쌓았고, 共產侵略의 戰亂속에서는 身命을 바쳐 救國의 使命을 다 하였으며, 國家社會發展의 先導的 役割을 담당하는 護國의 旗手로써 아낌없는 獻身을 하였다.¹⁾

警察의 基本任務는 國民의 保護와 社會秩序 維持이다. 그러므로 歷史의 흐름 속에서 政治·社會變動은 警察의 機能을 變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警察教育 또한 浮沈을 거듭하였다.

福祉志向과 正義實現으로 先進祖國을 創造한다는 國家目標와 現代社會의 激變 속에서 警察의 機能이 靜的이며 秩序執着的인 傳統警察觀의 舊殼에서 脫皮하여 國家·社會의 先導的 革新者의 役割까지도 擔當하여야 할 것이다.²⁾

警察機能의 變化는 警察官의 資質向上과 警察力의 提高를 要請하게 되며, 國民의 期待要求는 警察官이 發展的·民主的·行政人으로 養成될 것을 바란다.

發展의 原動力이 教育이라 할 때 警察組織의 發展과 警察官의 資質向上은 警察教育을 통하여서만 可能하게 된다.

그러므로 警察教育은 發展志向의 變化役軍을 養成하여야 할 것이고, 國家·社會 및 警察의 밝은 未來를 期約하기 위해서는 警察教育 發展에 政策的 決斷과 効率的인 投資를 하여야 할 것이다.³⁾

韓國의 警察教育이 警察이라는 特殊性을 감안한 專門職業化 教育으로써 그 使命을 다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그 遺産과 實態를 整理하고, 現在를 照明하면서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提示하려는 것이다.

第 2 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警察은 沿源의으로 人間의 社會生活과 더불어 生成·發展되어 國家있는 곳에 警察도 있었다.

우리의 歷史속에서도 政警一體의 古代社會나, 律令中心의 三國時代, 軍警一體의

1) 內務部治安局, 「韓國警察史(II)」(서울: 內務部治安局, 1973) 31 면

2) 金海東, “專門職 教育機關으로서의 警察大學”, 「警察學論集」 第 2 號(仁川: 警察大學, 1978) 22 면

3) 治安本部, 「'84 警察教育計劃」(서울: 治安本部, 1984) 序文.

高麗時代, 捕盜廳이 設置된 李朝時代에도 警察은 있었다. 그러나 警察教育 이라는 問題는 第二次 世界大戰이 終結로 祖國이 光復된 1945年 以後 우리 손에 의하여 警察이 創設된 때로 부터 始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警察教育은 警察制度의 變遷과 함께 政治·社會變動과 연관지어 몇 단계로 區分하고 多樣한 教育중에서 가장 基本이 되는 學校教育을 中心으로 教育機關, 教育課程, 教育內容 등에 관하여 問題點을 分析하고 그 改善方案을 模索하려고 한다.

第Ⅱ章 韓國警察教育의 變遷

第Ⅰ節 初期의 警察教育

韓國은 1945年 8月 15日 第2次 世界大戰의 終結로 日本의 壓制로 부터 解放되었으나, 主權國家로 獨立하지 못하고 美軍政이 實施되었고 警察도 軍政警察體制로 되었다.⁴⁾

軍政警察이 奉仕와 秩序라는 指導理念下에 治安維持와 制度의 民主化를 기도한 당시의 국내치안은 日人警察의 退去와 더불어 밀어 닦친 過多缺員, 그리고 南北分斷에 따른 治安需要는 多급한 警察官 募集과 教育을 要求하였다. 그리하여 美軍政은 1945年 9月 13日 警察官 講習所를 창설하여 警察教育을 實施하였는데 이것이 韓國警察教育의 始作인 것이다.⁵⁾ 1945年 10月 15日 警察官 講習所를 朝鮮警察學校로 改稱하였다가 1946年 2月 1日 國立警察學校로 名稱을 바꾸었고, 各道管區警察廳 所管下에 地方警察學校를 設立하였다. 이 때 幹部教育은 中央의 國立警察學校가 非幹部教育은 地方警察學校가 담당하므로써 初期 警察教育機關이 體系화된 것이다.

1946年 8月 15일 國立警察學校를 國立警察專門學校로 昇格시키고 警察幹部 養

4) 警察專門學校 「韓國警察制度史」(서울: 警察專門學校, 1955) 186~187면

5) 警察專門學校, 「警察教育史」(서울: 警察專門學校, 1966) 43면.

成에 必要한 教育課程과 教育內容을 完備하였다.

教育課程은 本科 1, 2 部와 別科를 두었고, 警察幹部 養成을 위한 警察幹部 候補生 制度가 실시되었다.⁶⁾

第 2 節 6·25 動亂과 戰時教育

1950年6月25日 6·25 動亂이 발발하자 警察專門 學校는 戰時體制로 轉換하고 戰時教育隊를 設置하여 戰時教育을 實施하였다. 그리고 收復地區의 治安을 擔當할 警察官 養成과 通信教育을 實施하면서 軍事知識을 위하여 軍教育機關에 委託教育도 實施하였다.

動亂이 休戰으로 일단락 되자 1954年3月3日 大統領令 第875號로 警察專門 學校 職制가 改正되어 地方警察學校를 廢止하고 警察專門學校에 統合하였다.

또한 教育課程도 改편하여 本科, 普通科, 特科가 있었는데, 本科는 警衛로 任命될 者의 教育和 警衛이상의 現職警察官 再教育이었고, 普通科는 新任巡警의 教育和 警査의 再教育이었으며, 特科는 特殊職務에 종사하는 現職警察官 教育으로 警察署長級 特科를 비롯하여 情報, 搜查, 査察, 公報, 消防, 兵事, 交通, 綠化, 衛生 등의 教育課程이 있었다.⁷⁾

警察專門學校 職制는 學校長은 內務部 治安局長(理事官)이 兼하였으며 學校에는 學監(警務官)을 두고 教授와 庶務課, 教務課, 訓練課, 教材課를 두었다.

第 3 節 5·16 革命과 警察教育

5·16 軍事革命은 警察教育에도 많은 影響을 미치게 되어 警察教育의 強化期를 맞이하게 되었고, 새로운 秩序와 警察의 近代化 問題가 實質적으로 促進되어, 1961年7月18日 閣令 第50號에 의하여 警察專門學校 職制가 改正되어 學校長은 理事官에서 教官으로, 教授를 副教官으로, 庶務課長은 行政事務官으로 기타 課長은 助教官으로 편성하였다.

6) 鄭振煥, “韓國警察 教育制度 發達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建國大學校 大學院, 1979) 98 면

7) 治安本部, 前掲書, <韓國警察史(II)>, 739~741 면.

이것은 警察教育 機構를 一般 公務員 教育院에 유사한 형태로 한 것이지만 아주 不合理한 편성이었다.⁸⁾

1962年 3月 10日 閣令 第518號에 의하여 各市·道 地方警察學校를 復活시키고, 各市·道 新規採用 新任課程과 巡警·警查級의 補修教育을 담당케 하였다. 그리고 同年 7月 5日에는 警察專門學校 附設 刑事學校를 設置하여 搜查 要員을 教育하였다.

教育課程은 중전의 本科, 普通科, 特科를 高等教育班, 普通教育班, 初等教育班, 特殊教育班으로 增強하고 民主警察의 養成 및 資質向上의 土전을 마련하였다.⁹⁾

第 4 節 教育發展과 警察大學 設置

警察專門學校 職制를 1962年 2月 9日 改正하여 學校長은 教官에서 警務官으로 하고 一般教授制를 廢止하면서 庶務課, 教務課, 教授課를 두었고, 그후 數次 改正으로 學校長을 治安監으로 副校長을 警務官으로 各 課長을 總警으로 補하였다.¹⁰⁾

1972年 2月 22日 警察專門學校 職制 를 廢止하고 동시에 새로운 警察大學 職制를 制定하여 大學體制로 昇格시키면서 機構와 教育課程을 改編하였다.

1975年 5月 30日 地方警察學校를 다시 廢止하고, 附設 交通學校, 消防學校 및 刑事學校를 附設 綜合學校로 統合시켜 教育機構를 一元化 하였으며, 1976年 8月에 警察大學 分校를 閉鎖하고, 1977年에는 特殊教育機關이었던 海洋警察 教育隊를 職務課程으로 吸收하였다.¹¹⁾

警察公務員法이 1969年 1月 7日 制定되어 同法 第30條에서 警察公務員의 教育訓練을 義務化하고, 第31條에서 教育機關의 設置등을 규정하였고, 1970年 4月 4日 大統領令 第4846號로 警察公務員 教育訓練規程이 制定되어 同規程에서 警察公務員의 學校教育을 규정한 바, 教育課程을 基本課程과 職務教育課程으로 大別하였다.

8) 魏駿嫻, 「警察專門學校 機構 및 運營上의 問題點과 改善方向」(仁川: 警察專門學校, 1972) 15면

9) 鄭振煥, 前揭論文, 171면

10) 魏駿嫻, 前揭書, 16면

11) 鄭振煥, 前揭論文, 231면.

1975年 警察教育機關이 一元化 되었을 때 教育課程도 大學校課程(新任, 基本, 職務)과 綜合學校課程(新任, 職務)으로 편성되어 大學은 幹部級을 綜合學校는 非幹部級을 教育하였다.

警察教育이 自主性を 確立하고, 國家發展과 社會變動에 適應하는 專門的 職業人 養成의 必要性이 要請되어, 1979年 12月 28日 法律 第3172號로 警察大學設置法이 制定公布되어 警察大學이 設立되었고, 1984年 1月 22日 大統領令 第11, 331號로 警察綜合學校 職制가 制定되어 附設에서 獨立하므로써, 韓國警察의 學校教育機關이 警察大學과 警察綜合學校로 二元化 되었다.

第Ⅲ章 韓國警察教育의 現況

第1節 警察과 教育訓練

警察公務員은 經歷職公務員中 特定職 國家公務員(國家公務員法 第2條, 第2項 2號)으로써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保護 및 社會公共의 秩序維持를 目的(警察官職務執行法 第1條)으로 犯罪의 豫防·鎮壓 및 搜查, 警備, 要人警護 및 對間諜作戰遂行, 治安情報의 蒐集·作成 및 配布, 交通의 團束과 危害의 防止, 其他,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警察官職務執行法 第2條)를 그 職務로 하므로 職務와 관련된 學識·技術 및 應用能力을 培養하기 위하여 教育訓練을 받아야 한다.(警察公務員教育訓練規程 第6條)고 규정하고 있다.

教育訓練이란 教育(education)과 訓練(training)의 合成語로서, 教育이란 特定한 職責과는 直接的 關聯성을 갖지 않는 個人의 一般的인 潛在能力을 綜合的으로 開發하는 것이며, 訓練은 職務를 위한 技術·能力을 發展시키는 것을 意味한다.¹²⁾

이와같이 보면 警察公務員의 教育訓練은 그 性格上 教育보다는 訓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화이트헤드(Alfred N. Whitehead)가 지적한 바와 같이

12) 劉鍾海外, 「行政學辭典」(서울: 考試院, 1984) 209면.

“教養的이지 않는 技術訓練은 없고, 技術的이지 않는 教養教育도 있을 수 없으므로 教育과 訓練의 絶對的 區別을 기대하는 것은 非現實的이다.¹³⁾”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教育과 訓練을 합친 뜻으로 教育이라 한다.

警察教育의 目的은 警察官으로 하여금 民主警察의 本質과 任務를 자각하고, 人格을 연마하며, 學識을 習得하고 實力을 培養하여 公明正大하게 그리고 能率的으로 職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있으므로, 採用의 必須要件인 新任者 教育과 在職者에 대한 繼續教育이 要求되어 진다.

韓國警察의 教育은 이러한 目的 이외에 韓國社會의 特殊性으로 인하여 몇가지 다른 目的이 또 있다.

첫째, 韓國警察은 창설당시 부터 現在까지 成長하여 오는 과정에서 本來의 位置를 찾지 못하고 기형화되고 歪曲되어 올바른 傳統과 警察像을 定立하지 못하였으므로¹⁴⁾ 先進祖國 創造의 傳統과 새 警察像 定立에 警察教育이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여야 한다.

둘째, 韓國警察이 계속적으로 추구하여 온 民主警察의 理想을 現實化하여 國民의 신뢰를 획득하고, 平生警察官으로서의 信念과 警察精神¹⁵⁾을 함양시켜야 한다.

셋째, 警察業務가 社會發展에 부응하며 變動이 提起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發展志向的 變化役軍 내지 革新者를 養成하여야 한다.¹⁶⁾

넷째, 多樣化, 專門化를 要하는 警察業務를 組織全體의 연관속에서 統計와 資料를 保管하고, 이를 分析·評價·綜合하는 統合機能(integrative function)과 豫測機能을 研究·發展시켜야 한다.¹⁷⁾

教育에 앞서 先行되어야 할 것은 우수한 資質을 갖춘 사람을 警察官으로 募集하는 것이지만, 우수한 在職者라 할지라도 社會의 急變, 科學技術의 發達·各種

13) Alfred N. Whitehead, The Aim of Education, (Washington: Mentor Books, 1953) p.58. as quoted in Charles B. Saunders, Jr, Upgrading the American Police, Education for the better law Enforcement (Washington: the Brooking Institution, 1970) p.115

14) 朴智正, “韓國警察教育管理에 대한 考察”, 「警察考試」 1970, 6月號, 50면

15) 警察精神은 護國, 奉仕, 正義로 하고 있다.

16) 金海東, 前揭論文, 23면

17) 金海東, 上揭論文, 22면.

法令의 改廢등 환경의 변화 속에서 警察業務를 民主的·能率的·合法的·合理的으로 遂行하기 위한 能力發展은 教育에 依存할 수 밖에 없으므로 警察教育의 重要性은 再強調 되어진다.

윌슨(O. W. Wilson)은 “警察行政의 改善을 위해서는 警察分野에 있어서 장래의 계획 및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더욱 우수한 경찰관을 양성하는 것이 最善의 方策이며 所望이다.” 또한 “資質높은 우수한 경찰관이 다수 배출될 때에 비로서 경찰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 수 있는바, 우수하고 자질높은 경찰관의 배출은 경찰관에 대한 教育을 통하여서만 얻어질 수 있다.”¹⁸⁾라고 역설하였고, 또 볼머(August Vollmer)는 “教育되지 않은 경찰관에게 경찰의 기능이 맡겨질 때에 國民의 生命과 自由는 保障될 수 없다.”¹⁹⁾라고 警告한 것은 警察教育의 重要性을 強調해 주고 있는 것이다.

警察公務員의 教育訓練에 관한 法的根據로 警察公務員法, 警察公務員教育訓練規程, 警察公務員教育訓練施行規則, 警察公務員職場訓練施行要綱등이 있고 教育訓練이 人事運營과 관련되는 사항은 警察公務員 昇進·任用規程에 규정하고 있다.

警察教育은 學校教育, 特殊教育, 職場教育이 있으며, 學校教育은 新任·必須·選拔教育이 있고, 特殊教育은 委託教育和 視察教育이 있다.

警察의 學校教育機關은 警察大學 및 附設 搜查幹部研修所와 警察綜合學校 및 分校가 있다.

第 2 節 教育機構

1. 警察大學

警察大學은 國家治安部門에 종사할 警察幹部가 될 者에게 學術을 연마시키고 心身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內務部長官 所屬下에 設置(警察大學設置法 第1條)한 警察最高의 教育機關이다.

1979年 12月 28日 警察大學設置法(法律 第3172號)이 公布되고 1981年 3

18) O.W. Wilson & Roye McLaren, Police Administration (New York : McGraw-Hill, 1963) p.310

19) August Vollmer, The Police and Mordern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36) p.231.

月 9日 大學生 第1期를 入學시키므로써 4年制 正規大學으로 새 出發을 하였다.

警察大學의 組織은 警察大學의 組織과 學事運營에 관한 規程(大統領令 第9847號, 1980.4.10)에 根據하는 바, 學長(治安正監)과 下部組織인 總務課, 教授部 및 學生隊를 두고, 教授部에 教務課를 두며, 附設機關으로 教育運營委員會, 治安研究所, 圖書館, 教育館, 學報社와 搜查幹部研修所가 있다.²⁰⁾

2. 警察綜合學校

警察綜合學校는 警察大學이 設置될 당시에는 附設綜合學校였으나 1984年 1月 21日 警察綜合學校로 獨立하였다.

警察綜合學校의 設置目的은 警察公務員法 第17條의 규정에 의하여 警察公務員 및 警察公務員으로 任用될 者에 대한 教育訓練을 實施하기 위하여 內務部長官 所屬下에 設置하고, 그 組織은 校長(治安監)과 下部組織인 總務課, 教授部 및 分校를 두고 있다.²¹⁾

第3節 教育課程 및 教育內容

1. 警察大學

警察大學은 正規大學으로서 警察幹部가 될 자에게 教育을 實施하기 위하여 設置된 職前教育(pre-education)機關이다.

警察大學生은 教育法 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大學入學 學力考査를 거친 者로써, 入學年度 3月 1日 기준 17歲 이상 21歲 미만의 男子로서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진 자를 所定の 試驗을 實施하여 合格者를 選拔하며, 學科는 法學科와 行政學科로 入學定員은 120名으로 修業年限은 4年이다.

學費등은 全額 國庫에서 負擔하며 所定の 課程을 履修하고 一定한 試驗에 合格하면 學位(法學士, 行政學士)를 授與하고 警衛로 任命하여 6年間 警察에 義務服務하게 한다.²²⁾

警察大學生의 教科編成은 一般學, 警察關係學, 精神教育, 外國語教育등으로 크게

20) 警察大學, 「1984년도 業務現況」 4면

21) 警察綜合學校, 「業務報告」, 1984年, 5면

22) 警察大學學則, 參考.

나누어 編成하고 있는데 教科別 時間數와 比率 및 學點을 보면 <表 3-1> 과 같다.

<表 3-1> 大學生 教科編成

구 분	계	일 반 학				경 찰 관 계 학				정 신 교 육	외 국 어
		소 계	교 양	전 공	특 강	소 계	실 무	체 육 무 도	군 사		
시 간	6,281 시간	2,336	640	1,440	256	2,440	1,044	788	608	295	1,210
비율%	100 %	37	10	23	4	39	17	13	9	5	19
학 점	182	134				24				8	16

一般學 科目은 文敎部 方針의 學位水準의 學術敎育으로 4年間 總敎育時間 6,281時間中 37%인 2,336時間으로 學點은 134學點이다.

警察關係學은 專門的인 警察知識과 實務遂行能力을 培養하고 發展的 行政人 養成을 위하여 警察機能別 實務(警務, 保安, 交通, 警備, 搜查, 情報, 對共, 通信)와 軍事學, 實技(打字, 水泳, 運轉, 球技, 射擊), 武術(柔道, 劍道, 跆拳道, 合氣道, 逮捕術)등의 科目을 敎育하는데 敎育時間은 39%인 2,440時間이지만 取得學點은 24學點으로서 大部分 非學點으로 敎育하며, 精神敎育은 奉仕警察像 定立을 위한 敎育으로 5%인 295時間이다. 그리고 現代社會의 國際化 추세와 開放政策에 대비하여 外國語(英語, 日語, 獨語, 佛語, 中國語,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語) 敎育을 強化하고 있는데 學點에 關係없이 19%인 1,210時間으로 比重을 크게 두고 있다.

警察大學의 學點制度를 一般大學 및 陸軍士官學校와 比較해 보면 一般大學의 경우 卒業時까지 140學點인데 비하여 警察大學은 182學點으로 42學點이 많은 바, 이것은 警察學 24學點과 精神敎育(訓育) 16學點이 많기 때문이다. 陸軍士官學校는 總 206學點으로 警察大學보다 24學點이 많은데 그것은 一般學에서 20學點, 訓育에서 8學點이 많으나 專門分野인 軍事學은 28學點으로 警察大學이 警察學과 軍事學이 32學點에 비하여 4學點이 오히려 적은 편이다.

敎育時間은 一般大學이 2,344時間에 비하여 警察大學은 6,281時間으로 약

2.7 배가 많으며, 陸士의 5,662 時間보다 1.1 배인 619 時間이 더 많다. 이것을 整理하면 <表 3-2>와 같다.

<表 3-2> 學點 對比表

구 분 학교별	학 점					교육시간
	계	일반학	경찰학	군사학	훈육	
경찰대학	182	134	24	8	16	6,281
육군사관학교	206	154		28	24	5,662
일반대학	140	134		6		2,344

자료 : 경찰대학, '84 업무 현황, 13 면

警察大學은 大學生 教育만을 專擔하는 것이 理想的이나 警察教育機關의 環境의 要因으로 인한 大學施設의 利用, 實務와 理論의 連繫教育, 專任教授의 活用, 教育體系의 改編등으로 1983 年 부터 잠정적으로 現職教育 (in-service education) 課程인 管理者課程 및 高級幹部課程의 教育도 擔當하고 있으며 附設教育機關으로서 搜查幹部研修所의 教育課程도 擔當하고 있다.

管理者課程은 警察教育機關에서 實施하는 警察의 最高의 教育課程으로써, 教育對象은 總警, 警正中에서 選拔하여 實施하며 教科目은 總 367 時間中 精神教育 135 時間 (36.1%), 政策管理 122 時間 (33.2%), 指揮統率, 職務, 素養 110 時間 (30.7%) 등으로 一線指揮能力과 地域社會 協助能力을 培養시키고 國家發展目標와 國政理念에 대한 認識을 提高시키고 있다.

高級幹部課程은 警正·警監 계급의 必須教育課程으로써 教科目은 總 507 時間中 精神教育 130 時間 (25.6%), 政策管理 132 時間 (26.1%), 職務 134 時間 (26.4%), 教養 70 時間 (13.8%), 其他 41 時間 (8.1%) 등으로 精神力 強化와 國家發展目標에 부응하는 時局觀 確立 및 中間監督者로서 產業社會에 適應할 수 있는 職務遂行能力 培養과 創意力을 開發시키고 있다.

搜查幹部 研修課程은 警正·警監中에서 搜查分野에 適性이 있는 優秀者를 嚴選하여 少數精銳教育을 實施하는데 理論과 搜查技術에 관하여 一般大學院이나 司法研修院 水準의 教育을 實施하며, 教科內容은 總 992 時間中 精神教育 86 時間

(8.7%), 素養 128 時間(12.9%), 術科 48 時間(5.4%), 實務科目 446 時間(搜查概論, 搜查節次, 搜查運營, 搜查指揮, 科學搜查 등 45%), 實務研修 212 時間(21%), 其他 72 時間(7%)이다.

2. 警察綜合學校

警察綜合學校의 教育課程은 必須教育의 初級幹部課程과 選拔教育의 專門化課程 및 新任課程(幹部候補生, 新任巡警, 新任教育未履修者), 義務戰警課程과 特別教育인 理念化 教育課程이 있다.

初級幹部課程은 警衛·警查級의 必須教育 課程으로 初級幹部로서의 素養, 體力 및 職務遂行能力을 培養하기 위한 教育으로 16 週間 634 時間으로서 精神教育 162 時間(25.5%), 教養 171 時間(26.5%), 職務科目 276 時間(44%), 其他 25 時間(4%)이다.

專門化教育課程은 多樣하게 分化된 警察業務를 効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各分野別로 職務遂行能力 涵養과 새로운 知識 및 技術을 習得시킬 目的으로 設置된 選拔教育課程으로써, 外國語(英語), 機能別(搜查, 情報, 對共), 戰警基幹要員, 教官要員課程등이 있으며, 教育對象, 教育期間, 教育의 基本目標등이 多樣하다.

幹部候補生課程은 新任警察幹部 養成을 위하여 1947 年 9 月 1 日 創設된 教育課程으로서 教育對象은 公開競爭試驗을 통하여 60 餘名을 選拔하여 1 年(52 週)間 教育을 實施하여 平生警察官의 天職意識과 爲民奉仕의 使命感을 함양시키고, 實用爲主의 實務教育을 實施한다.

教科內容은 總 63 個科目 2,002 時間에 精神教育(13 個科目) 263 時間(13%), 教養科目(法律學 등 13 個 科目) 455 時間(23%), 實務科目(警察機能 37 科目) 1,079 時間(54%), 其他 197 時間(10%)이다.

新任巡警課程은 新規採用巡警과 新任教育未履修者(警查以下)에 대하여 必須的으로 實施하는 教育課程으로써 新規採用者는 24 週, 特殊警科(海洋, 運轉, 航空, 通信) 및 新任教育 未履修者는 12 週의 教育을 實施하는바 精神教育, 教養, 職務科目 등 警察基本教育을 實施한다.

義務戰警班은 戰鬥警察隊設置法 第 2 條의 3 에 의거 募集한 者를 12 週間 警察基本教育을 實施하는바 總 434 시간 중 精神教育 97 時間(22.4%), 教養科目 54

時間(12.4%), 職務科目 263時間(61%), 其他 20時間(5%)의 教育을 實施하고 警察單純業務(派出所外勤, 防犯巡察, 交通, 通信, 運轉, 電算, 留置場看守, 行政補助등)에 종사시킨다.

第IV章 韓國警察教育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第1節 問題點

1. 教育機關의 機能

韓國의 警察教育機關은 警察大學과 警察綜合學校가 있고 이들 學校는 그 機能이 相異하다. 卽 警察大學은 國家治安 部門에 종사하는 警察幹部가 될 자에게 職業化 教育과 一般大學教育의 二重性을 갖인 職前教育機關이고, 警察綜合 學校는 警察公務員의 教育訓練機關으로서 職業化 教育을 目的으로 하는 單一性을 갖인 現職教育機關이다. 그러므로 警察大學은 大學生 教育만을 擔當하고 現職者는 警察綜合學校에서 教育하는 것이 理想的이다. 그러나 現在의 警察教育은 警察大學이 大學生 이외에 在職者인 管理者 및 高級幹部課程을 擔當하고, 警察綜合學校도 治安 部門에 종사할 警察幹部가 될 者(警察幹部候補生)와 在職者 幹部教育課程(初級幹部課程), 各分野 專門化課程, 新任非幹部課程, 義務戰警 教育까지 擔當하고 있으므로 教育體系의 混合으로 그 段階性이나 連繫性이 없다.

그리고 教育機關에 教育行政管理者 및 實務者들의 빈번한 交替는 教育機關의 機能正常化와 傳統性 定着을 沮害한다.

例컨데 警察大學長의 경우 單數階級인 治安正監으로 補하는 바, 이는 他轉補가 不可能하고 治安總監(治安本部長)으로 昇進되지 않을 경우, 治安本部長 交替時에는 大部分 警察職을 떠나야 하는 不合理한 階級體系이다. 이러한 狀況이 近視眼的 官僚風土에서는 革新的이거나 未來志向的인 왕성한 使命感보다는 來日에 대한 不安과 오늘의 미봉책이 意識構造를 支配하게 되어 組織管理나 리더십을 저

해하게 된다.²³⁾

빈번한 人事移動은 教育을 直接擔當하는 教官이나 教職員의 경우에도 同一하고, 이것은 警察組織 內部에 一線勤務를 希望하고 教育機關 勤務를 忌避하는 인습과 전통이 現在까지 教職員 充員의 抵抗要因으로 作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教育機關이란 地方 勤務者의 中央 轉入 기착지로서, 中央 勤務者의 地方轉出 代用處로서 認識되어 短期間內에 人事交替가 빈번하고 教育機關 勤務者는 無能者로 看做되며, 中央轉出을 最大의 榮轉으로 認識하므로 教育機關의 機能正常化나 行政의 定着을 沮害하는 原因이 된다.

警察綜合學校의 경우도 警察大學과 類似한 狀況이며 特히 警察綜合學校는 警察大學 設置이전의 警察大學(警察專門學校가 昇格된 警察大學)과 同一한 機能을 遂行하면서 學校性을 부여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機能이 再構成되어야 할 것이다. 社會變動과 治安需要의 激增은 警察業務의 專門性和 多樣性을 要請하고 專門人力과 優秀한 資質 및 높은 學歷水準의 警察官을 要求하지만 現在의 警察教育體制로서는 幹部養成은 制度的인 補完이 되었으나 非幹部의 充足은 警察綜合 學校가 教育訓練機關으로서의 機能만으로는 問題解決에 接近할 수 없다.

그리고 教育機關의 附設 治安研究所의 機能과 活動이 警察의 最高研究機關으로서 正常化 되고 圖書館등의 警察情報管理室으로서의 機能을 遂行하여야 할 것이다.

2. 教授要員

教育計劃을 直接 實踐에 옮기는 사람은 教授, 教官등 教授要員이다. 教授要員의 能力如何가 教育의 目標達成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優秀한 教授要員確保가 教育發展의 中核的 要素이다.²⁴⁾

教授要員은 數的 充足보다 質的充足이 優先하여야 하는바 警察大學의 경우 教授要員의 現況은 一般學 教授 16名, 警察學教官 8名과 外來講師로 學科教育을 담당하는데 一般學 教授의 不足은 外來講師에 依存하는 方法으로 需要를 充當하고 있으나 警察學科目 담당 教官은 質은 고사하고 量的需要마저 解決되지 않고

23) 崔平吉, "韓國警察의 人力管理 및 組織行態의 實證分析", 延世行政論叢, 第7輯(서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0) 147면

24) 金海東, 前揭論文, 29면.

있는 實情이다. 警察大學의 教官要員에 대한 問題點은

첫째, 教官要員의 多様な 科目에 比하여 數的不足은 教授內容의 專門化를 沮害한다.

둘째, 教官要員의 選拔基準이 없고, 質에 대한 評價尺度가 없으므로 資質低下와 士氣低下의 要因이 되고 있다.

셋째, 教官은 社會變動과 治安需要 變化에 敏感하지 못하여 實務와 理論의 連結에 심한 괴리현상을 誘發하게 되며, 이것을 補完할 기회와 支援이 없다.

警察綜合學校의 教官의 경우에도 警察大學의 경우와 大同小異하나, 研究의 負擔이 적은 반면 教育時間이 過重하다. 警察綜合學校는 教官 132名(本校 89名, 分校 43名)이 多様な 教育課程에 教官 1人當 1日 平均 3.4時間의 講義를 負擔하고 있다.²⁵⁾

3. 教育課程

警察教育은 發展志向의 變化役軍으로서의 警察官의 資質과 能力 함양 및 專門職業人을 養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全體教育課程이 一貫性, 段階性 및 連擊性이 있어야 한다.²⁶⁾

警察教育을 新任者 教育과 在職者 教育으로 分類하면 新任者 教育은 任用의 必須要件이고, 在職者 教育은 職務遂行能力 發展을 위한 教育이라 할 수 있다.

在職者 教育에는 당해 계급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必須教育과 選拔教育이 있으며, 職務遂行의 專門性을 위한 專門化 教育이 있다. 이러한 教育課程이 一定한 體系나 段階性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被教育 對象者의 個人意思에 따라 選擇되어 지는 모순을 가졌으므로 教育이 組織의 發展이나 個人의 資質向上 및 能力啓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면 警察幹部候補生으로 新任 教育課程 1年을 이수하고 警위로 任用되어 昇進을 못한 경우 階級停年이 되는 15年이란 긴 세월을 아무런 教育을 받지 않고도 警察職에 奉職할 수 있으며, 昇進을 하는 경우에 高級幹部課程 1회 教育만 이수하면 治安總監이 될 때 까지도 教育

25) 警察綜合學校, 「業務報告」(仁川: 警察綜合學校, 1984) 26면

26) 金海東, 前掲論文, 31면.

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現行 警察教育 體系이다. 그리고 各 教育課程間에 警察教育에 一貫된 共通分母를 찾을 수 없는바 그것은 教育科目이나 內容의 連繫性과 段階性을 缺如하고 있는 것이다.

在職者 幹部의 教育課程인 初級幹部課程, 高級幹部課程, 管理者課程에 있어서 警察實務 科目은 機能別로 實施하나 段階性이 없이 重複되는 傾向이고, 教養科目의 경우에는 學問的인 系譜나 段階別 區分없이 階級別 比重에 따른 科目의 나열에 不過하고, 教育對象者의 學歷水準 및 理解度에 대한 고려없이 科目이 選定되며, 教育期間에 比하여 많은 科目을 이수케 하므로써 過重한 負擔과 實務와의 連繫性도 찾을 수 없다.

在職者 幹部의 教育課程別 教養科目 對比表는 <表 4-1>과 같다.

<表 4-1> 재직자간부의 각과정별 교양과목 대비표

초 급 간 부 과 정			고 급 간 부 과 정		관 리 자 과 정	
과 목	시 간		과 목	시 간	과 목	시 간
헌 법	6		국 제 정 치 론	18	한 국 정 치 론	14
형 법	25		국 민 소 득 론	20	국 제 정 치 론	14
형 사 소 송 법	25		기 획 론	18	한 국 경 제 론	14
행 정 법	20		형 사 법 연 습	20	정 책 형 성 론	14
행 정 학	20		한 국 현 대 사	18	한 국 범 죄 론	12
인 구 정 책	2		유 가 증 권 법	18	외 교	2
민 사 법 개 론	12		경 제 시 책	2	경 제	2
한 국 경 제 의 발 전	20		외 교 정 책	2	노 동	2
범 죄 심 리 학	10		교 통 행 정	2	조 세	2
공산주의 이론비판	12		조 세 정 책	3	환 경	2
지역 사회 개발론	9		체 육 진 흥	2	인 구	2
인 간 관 계 론	4		환 경 보 전	2	국 토 종 합 건 설	3
감 독 론	4		인 구	2		
예 산 론	4		국 토 건 설	5		

초 급 간 부 과 정			고 급 간 부 과 정			관 리 자 과 정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역	사	학						
청	소	년						
올	림	픽						
대	화	(화						
중	교	특						
생	활	영						
		어						
		10						
		2						
		2						
		5						
		5						
		20						

또 現在 警察教育은 採用의 要式節次이고 昇進의 必須要件으로만 認識되어지고 職務遂行能力向上이나 資質向上을 위하여서는 그 必要性이 提高되지 못하고 있는 바 昇進의 必須課程인 初級·高級幹部課程이 아닌 選拔課程은 教育忌避 現象으로 各 警察機關別로 差出하게 된다.

教育忌避 現象은 一般管理者나 監督者는 部下가 教育을 希望할 경우 職務遂行人力減少를 우려하고, 部下의 能力發展이나 새로운 機能習得을 猜忌하는 心理的要因에 의한 抵抗과 被教育者 自身이 教育의 要請과 提案을 自己能力의 不信으로 看做하는 경향 및 教育의 結果가 人事管理에 크게 反映되지 않으며, 自身の 思考方式과 行動樣式에 대한 變化를 選好하지 않는 抵抗등으로 인하여 累增되며 教育의 必要性이 높이 認識되지 못하고 있다.

警察職務遂行의 專門化와 能力向上을 위하여서는 專門化 教育課程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警察業務와 機能의 多樣性에 比하여 너무 편협하게 設定되었고 職種別, 分野別로 細分化·專門化 되지 못하여 警察業務의 均衡發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教育定員制(教育T/O)가 없는 狀況에서 治安需要의 急變은 教育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게 되어 教育人員의 差出은 職務의 空白을 招來하거나 人력을 減少시키게 되어 教育의 中斷, 延期, 短縮등을 不可避하게 하여 教育自體를 不信 또는 不確實하게 하므로 教育의 效果期待가 어렵게 된다.

警察組織과 警察力의 均衡的인 發展을 위하여서는 幹部教育에 못지 않게 非幹部教育이 重要하나 警察教育의 比重은 幹部級에 置重하고 있는 경향이다.

1984 年度の 警察教育計劃에 의하면 全體 14 個 教育課程中에서 非幹部를 위한 教育課程은 情報實務者 特別教育(1 週) 外國語課程(12 週), 戰警基幹要員 課程(6 週), 新任課程(新規採用者, 未履修者) 등 4 個 課程 뿐이고 非幹部 在職者의 一般的인 補修教育課程은 없다.

警察組織과 業務遂行課程에서의 非幹部는 職務遂行의 實際面이나 對民處遇面에서 幹部보다 훨씬 比重을 많이 차지하는 實情이며 警察의 專門性, 民主化, 能率化의 問題는 非幹部級에 더 많이 要請된다고 할 수 있다.

4. 教科內容

警察大學生의 教科內容은 法學科와 行政學科라는 制約性으로 인하여 一般大學의 法學科, 行政學科와 教科內容이 同一하므로 警察大學의 特殊性이 적으며, 選擇科目의 경우에도 交叉重復되어 兩學科의 特殊性도 희박하다.

警察學 科目도 警察學概論, 韓國警察史, 警務論, 裝備管理論, 保安論, 外勤論, 交通論, 犯罪搜查論, 法醫學, 戰術學, 火器學, 警備論, 犯罪鑑識, 警察通信, 一般情報論, 電算論, 對共情報論, 外事情報論, 海上保安論, 刑事實務論 등 20 個科目에 24 學點으로서 警察機能의 全分野를 망라하고 있으나 科目數에 比하여 學點이 적으므로 結果的으로 教育時間이 적어 走馬看山格이 되어 專門性이나 技術性 向上은 期待할 수 없다.

現在 警察大學生은 募集學科가 法學科, 行政學科로서 人文系列에 局限되므로 警察業務의 多様な 分野에 技術과 人力을 提供할 수 없으므로 特殊分野의 人力確保가 어려워 時代에 落後性을 免할 수 없게 된다.

警察幹部候補生의 教科目은 高等學校 卒業水準의 學力所持者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法律科目으로 短期間에 많은 科目을 履修하므로 教育效果를 거양하기 어렵다.

教育效果의 評價는 教育目的에 대한 認識程度, 動機賦與의 適切性, 教育目的과 教育需要와의 相關關係, 教育目的에 대한 教育內容의 適切性, 教育方法의 妥當性·實用性·實際的·具體的인 適用程度, 心理的 受容度 및 變化度, 被教育者의 行動變化에 대한 組織內的 支持度, 目的達成에 寄與度 등이 基準이 된다.

新任教育課程 義務戰警의 教育內容은 教育期間 12 週 434 時間에 精神教育 10

個 科目에 97 時間으로 22.4 %이고, 教養科目은 法學概論, 刑法, 刑事訴訟法, 警察法, 國史, 漢文, 生活英語, 韓國經濟, 靑少年指導, 人口政策등 11個 科目에 54 時間으로 12.4 %이며, 實務科目은 31個 科目에 263 時間으로 61 %이나 實習을 包含하여 科目當 平均 8 時間으로 教育效果를 기대할 수 없으며 不足한 教育으로 警察職務를 遂行하게 되므로 警察力 弱化는 不可避하게 된다.

警察職務 遂行能力 向上을 위한 各 專門化 教育課程도 짧은 教育期間에 比하여 科目이 많고 專門性이 不足하다.

第 2 節 改善方案

1. 教育機關의 機能과 教育體系의 整備

警察大學은 大學生 教育만을 專擔하는 것이 設置目的에도 適合하고 理想的이다. 그러나 警察教育의 現實을 감안할 때 在職者 幹部教育 全體(管理者課程, 高級幹部課程, 初級幹部課程)를 大學이 擔當하고 警察綜合學校는 教育法이 認定하는 學校性(教育法 第 128 條의 2)을 賦與하여 專門大學으로 昇格하고 義務戰警 轉役者를 募集하여 專門大學課程 2 年間 教育을 實施하고 巡警으로 任命하면 全體警察官의 資質 및 學力水準의 向上과 時代的 要求에 副應하는 職務遂行能力이 向上될 것이다. 一般國民들의 學歷水準이나 對民奉仕의 民主性, 職務遂行의 專門性 및 2,000 年代 以後를 長期展望한다면 新任巡警의 教育은 長期的이어야 하며 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教育體系는 各 教育課程間에 教科目を 體系있게 整備하여 連繫성과 段階性을 確立하고 教科目 選定에 있어서도 警察行政의 道具科目으로서 實用성이 큰 警察社會學, 心理學, 社會心理學, 犯罪學, 刑事政策, 犯罪心理學, 警察行政學, 刑事法, 警察學概論, 警察史, 社會變動論, 警察統計學등 警察關係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教育效果의 評價가 充分히 考慮되어야 한다.

教育課程 設定은 職務의 專門성과 能力向上에 重點을 두고 非幹部補修課程, 初級幹部課程, 高級幹部課程, 管理者課程을 體系的 段階的으로 實施하되 現行 階級 中心에서 勤務期間 中心으로 整備하여야 할 것이다.

教育行政의 安定과 傳統樹立 및 教育機關이 政治的, 行政的, 財政的 예속으로부터 脫皮하기 위하여서는 學長, 校長을 비롯한 教職員의 人事管理가 一般警察機

關과는 다른 次元에서 運營되어야 하며 教育機關에서 使命感을 가지고 長期間 勤務할 수 있는 誘引要素가 提供되어야 한다.

教育機關에서 長期勤務 誘引要素로 考慮되는 方案은 教育機關 勤務者에게 現實的인 手當支給, 一定期間 勤務者의 昇進保障, 能力發展을 위한 機會提供 및 支援, 勤務希望者의 全國的 嚴選등이다.

警察教育機關의 機能은 教育機能과 더불어 警察業務 全般을 分析·綜合하고 體系있게 整理하여 組織과 警察業務發展에 反映하여야 할 役割도 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各種 資料를 蒐集·整理·保存하고 새로운 展望에 對備하여 問題가 되기 전에 教育이 實施되어야 할 것이므로 圖書館의 機能과 研究所의 綜合機能 및 活性化 등으로 警察教育機關이 警察發展의 產室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教授要員의 確保

教育의 成敗는 優秀한 教育對象者와 優秀한 教授要員(Teaching Staff)에 달려 있다. 現在 警察教育機關의 教授要員의 경우 一般教授는 數的 確保 以外에 別問題가 없으나, 警察職 教官의 경우에는 資質과 能力이 優秀한 者가 教育機關에 勤務하려는 誘引要素가 提供되어야 한다. 그것은 研究手當의 支給으로 最小限의 生活安定과 能力發展을 위한 各種 機會(國內·外研修 및 視察, 委託教育 등) 提供과 支援, 一定期間 誠實히 勤務하는 경우 昇進과 昇進後 教育機關에 계속 勤務가 可能하여야 할 것이며, 教官補職과 同時 專任講師로 任命되는 教授兼職制 導入 및 研究의 專門性和 教授의 充實性을 기할 수 있는 1機能 複數教官制가 바람직한 方案이다.

3. 教育課程의 體系化와 教育의 必要性 提高

警察業務의 直接擔當者인 非幹部의 資質向上을 위한 補修教育課程을 新設하고 新任巡警의 教育期間의 延長과 專門大學卒業의 學歷水準向上 그리고 初級幹部課程은 幹部로서의 資質涵養과 基礎教育의 強化를 위하여 教育期間을 延長(6個月程度) 하고, 高級幹部課程, 管理者課程은 階級中心 區分에서 勤務期間中心으로 一定한 期間 勤務(例컨데 幹部로서 4~5年마다)한 者는 段階別 또는 反復적으로 이수하는 教育課程으로 改正하고 教育修了 方法도 現行 席次中心 教育에서 成績中心

(가령 修了點數를 平均 80 點으로)으로 하여 成績未達者는 一定期間後 反復教育이 可能하도록 한다.

教育의 評價와 人事管理의 連繫는 勤務成績評定에서 教育回數, 教育成績, 教育期間, 教育種類등을 統合併算하고 教育과 職務遂行의 聯關關係를 開發하며 現在와 같이 教育이 昇進의 形式要件이 된 教育履修의 폐습은 拂拭되어야 한다.

教育의 必要性 提高를 위하여서는 專門化 教育課程을 轉補의 必須條件으로 하고 勤務期間中心의 段階別 教育으로 能力向上과 새로운 知識을 涵養시키는 制度的 裝置와 教育이 懲戒의 手段으로도 活用되어야 할 것이다.

警察官이 輕微한 過誤나 職務遂行能力의 不足으로 인하여 懲戒의 對象이 된 경우 排除懲戒를 除外하고는 懲戒로 인한 士氣低下 및 勤務意慾을 減退시키는 것 보다는 所定の 教育을 履修케 하여 직무의욕을 高취시키고 能力을 發展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組織發展의 戰略이 될 수 있다.

現在 편협하게 設定된 專門化 教育課程을 多様하게 細分化하고 教育期間도 一律性 보다는 反復教育이 可能하도록 機能別 特性에 따라 伸縮性 있게 長·短期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 警察組織의 發展과 教育發展을 위하여서 研究課程이 新設되고, 國防 大學院 入校者 水準의 警察高級幹部로 하여 警察關係學의 개발 및 警察行政에 관한 研究를 持續적으로 展開하며 長期的으로는 警察大學院(假稱)設置의 기반을 마련하고 研究課程 履修를 高位職 昇進의 基本條件으로 活用하여야 한다.

4. 警察學科目 開發과 教科目 整備

警察大學生의 募集學科가 現在 法學科와 行政學科 만으로 되어 專門職 教育 機關으로서의 特徵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募集學科를 警察學科로 하고 專攻分野는 教養課程이 끝난후 警科分類를 前提로 專攻을 選擇하도록 한다. 教科目은 一般學은 警察行政의 道具科目으로서 多様な 分野에서 重要科目을 履修시키고 警察關係學을 必須科目으로 하여 警察幹部로서 必要한 資質과 知識을 연마시켜야 할 것이다.

警察關係學으로서는 刑事證據法, 警察記錄, 強制執行法, 社會問題, 公共安全, 指紋學, 刑事攝影學, 警察法規, 社會政策, 民防衛論, 氣象學, 群衆心理學, 暗號學, 人

間學, 社會心理學, 人口學, 交通學, 警護學, 情報學, 謀略學, 地理學 등과 共產圈研究가 考慮될 수 있다.²⁷⁾

警察大學生 募集은 人文系列 偏重에서 自然系列과 女學生 募集方案도 檢討되어야 하는바, 警察業務는 鑑識, 通信, 裝備, 交通施設, 兵器, 航空등 技術分野가 增大되고 있으며, 女性人口의 增加와 女性犯罪의 增加現狀은 女子警察官의 需要增大와 專門性이 必要하므로 女子警察幹部 養成이 時代的 要求로 登場할 것이다.

5. 警察官 定員 및 機構調整

警察大學生이 年間 120名 씩 輩出된다면 現在의 階級體制 및 警察機構로서는 수용이 不可能하다.

年間 120名 씩 젊은 幹部의 增員은 既成警察官의 昇進에 影響을 미치게 되며 昇進에의 기대가 없어지거나 退職이 앞당겨 진다면 警察組織 全體에의 波及効果는 심각하여 질 것이며 이러한 心理的 負擔과 그 影響은 全體警察官 士氣低下를 招來하고 警察官 新規採用에도 크게 作用할 것이다. 그러므로 警察大學生의 人事管理는 신중히 研究·檢討되어야 하며, 考慮되는 短期的인 方案은 警察大學 卒業生은 警察機關內 各級 研究分野에서 一定한 기간 勤務하게 한후 一線機關에 漸增的으로 配置하며, 相當數 人員을 國內·外에 留學 또는 研修를 시켜 教育 機關으로 誘導하는 方案과 相當期間 순환보직으로 組織內에 同和시키면서 大學生의 全體幹部構成比를 늘려가는 方案이 있으며, 長期的으로는 警察全體의 人力需給狀況을 豫測하여 募集定員을 調節하며 警察官의 定員 및 機構調整 方案이 研究되어야 한다.

警察幹部候補生 制度는 警察大學生이 卒業하는 時點에서 存·廢가 거론되고 있으나 現在와 같은 一般幹部 養成을 위하여서는 廢止되어야 할 것이나 制度의 性格을 改編하여 警察이 必要로 하는 技術人力 確保方案으로 存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募集分野를 特殊警科 專門人力으로 하고 教育對象을 技術係 工業高等學校 出身으로 하여 警察專門大學(假稱)에서 教育을 實施하고 專門大學 卒業資格을 부여하고 警衛로 任命하는 制度로 變形하는 것이 發展志向的인 것이다.

27) 中國 中央警官學校 本科(4年課程) 各 學系別 必須 및 選擇科目에서 발췌한 것임.

第V章 結 論

現代社會의 變化는 治安需要의 增加와 警察行政의 民主化, 專門化, 技能化, 能率化를 要求하며, 國家·社會發展은 變化役軍으로서의 警察官을 必要로 한다.

發展韓國의 變化役軍을 養成하는 警察教育의 發展을 위하여서는 現在의 많은 問題點을 과감히 改善하여야 할 것이며, 그 改善方案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教育機關의 機能擴大와 教育體系의 整備

둘째, 教職員 人事管理의 刷新

셋째, 教授要員의 確保

넷째, 教育課程의 段階化와 教育의 必要性 提高

다섯째, 警察官 定員 및 機構調整

등으로서 이러한 問題解決은 全體的인 政策考慮와 政治的 支持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될때 警察發展과 現代治安需要에 맞는 效果的, 民主的, 警察教育體系가 向上·發展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 警察大學, 「警察學概論」 仁川: 警察大學, 1982.
- 內務部治安局, 「韓國警察史(I)(III)」 內務部 治安局, 1972, 1973.
- 朴東緒, 「韓國行政論」 서울: 法文社, 1978.
- 徐基榮, 「韓國警察行政史」 서울: 法文社, 1976.
- 吳錫泓, 「人事行政論」 서울: 博英社, 1975.
- 魏駿懌, 「警察專門大學校機構 및 運營上的 問題點과 改善方向」 仁川: 警察專門學校, 1972.
- 劉鍾海, 「行政學辭典」 서울: 考試院, 1984.
- 尹世昌, 「行政法」(上)(下) 서울: 博英社, 1981.
- 李漢彬, 「社會變動과 行政」 서울: 博英社, 1981.
- 玄圭柄, 「韓國警察制度史」 서울: 民主警察研究會, 1955.
- 金海東, “專門職 教育機關으로서의 警察大學”, 「警察學論集」 第2號, 警察大學 1978.
- 朴東緒, “警察行政史”, 「行政論叢」 第4卷2號,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6.
- 李成基, “韓國警察教育制度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5.
- 鄭振煥, “韓國警察教育制度 發達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建國大學校 大學院, 1979.
- 崔平吉, “韓國警察의 人力管理 및 組織行態의 實證分析”, 「延世行政論叢」 第7輯,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80, 85~147 面
- Saudner, Charles B., Upgrading the American Police, Whashington: The Brooking Institution, 1970.
- Sullivan, John L.,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3r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7.
- Wilson. O.W., McLaren, Roy C., Police Administration, New York: McGraw-Hill, Inc., 1963.